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제이유그룹, 인터넷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제이유 그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신문 '폴리뉴스' 운영사인 (주) e-원컴의 김능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폴리뉴스는 지난 17일자로 "JU 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 로비'"라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제이유 그룹은 이 뉴스에 대해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그룹은 보도자료에서 "폴리뉴스의

기사는 지금까지 제이유를 향해 퍼부어진 흑색선전의 결정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의 폭로 비방성 기사를 확인 과 정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도한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보도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과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기사의 작성을 사주한 배후 세력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폴리뉴스'는 제이유 그룹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법적 조사를 통해 그룹의 명예 회복을 기대한다는

의미다.

제이유 그룹은 '폴리뉴스' 기사에서 언급한 검찰과 경찰, 공정위에 대한 로비는 단 1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직접 판매 기업은 미확인된 언론보도에 무척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온갖 억측과 음해성 공격을 견뎌온 제이유 그룹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마무리했다.

머니투데이 2006년 4월 18일

### 변양호 대표, 김재록 씨 보도관련 MBC 고소

변양호 보고판드 공동 대표가 김재록 씨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화방송(MBC)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고위 관료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0일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된 김재록 씨 관련 의혹 기사에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해당기자와 보도국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

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30일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를 이른바 경제실세들과 연결시켜준 고리가 김재록 씨가 아니냐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김재록 씨가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맡았던 재정경제부 국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스티븐 리(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 대표 측은 이 같은 MBC의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 MBC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재록 씨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맡았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라고 보도함으로써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변 대표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 측은 그러나 "몇몇 일간지와 방송들도 31일자 신문을 통해 이와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지만 가장 먼저 보도한 MBC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판단해 고소를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2006년 4월 3일

### 이 총리 "윤상림과 골프친 적 없다" 명예훼손 1억 소송

이해찬 국무총리가 7일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와 자신이 '긴밀한 관계'라고 보도한 주간지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총리는 소장에서 "지난 1월 4일자 일요신문 1, 2, 3면에 윤상림이 구속 직전까지 나와 함께 골프를 치

고 총리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구속직전까지 함께 라운딩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됐다"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취임한 뒤 윤상림과 골프를 친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총리공관을 드나들었다는 증언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심하게 손상된 데다 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운영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6년 3월 8일

## “허위보도자료 배포자가 명예훼손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에 근거해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고, 이 때문에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배상책임은 자료 배포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영화배우 배용준 씨 등 ‘한류스타’ 사진집을 출간한 일본 출판사 ‘문예춘추’가 “허위 보도자료를 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진작가 조세현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는 문예춘추 측에 2천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 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예춘추가 당초 약정보다 많은 한류스타 사진을 게재한 사진집을 혐의도 없이 기일을 앞당겨 출간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조 씨가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료가 보도되면서 문예춘추는 일방적으로 사진집 출간을 강행한 것처럼 오인 받아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으므로 조 씨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보도자료에 나타난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정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06년 5월 8일

## ‘과자의 공포’ 2탄 파장 예고 KBS “유해 중금속” VS 제과업계 “300억 손배소”

KBS ‘추적60분-과자의 공포’ 2편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유명 과자 속에 든 중금속의 위해성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제2의 과문을 예고하고 있다. 제과업계 측은 “중금속이 아니라 미네랄 성분”이라고 주장하며 KBS에 300억 원 가량의 ‘초대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 ‘추적60분’ 팀 “아토피보다 더 심각한 문제”

‘과자의 공포’ 편을 제작한 KBS 이후락 PD는 2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힘들다면서도 “1편에 다뤘던 과자의 아토피 유발 및 심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과자 속 물질을 다룰 계획”이라며 다음달초 방송을 예고했다.

‘추적60분’은 지난달 8일 방송에서 과자의 식품첨가물이 아이들의 아토피 증세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 및 소비자들은 “비양심적인 가공식품 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후속보도를 요청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PD는 “2편 역시 위해성 실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과자 속 트랜스지방, 당노 유발 문제, 시청자 제보 등을 다루는 후속편 방송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PD는 이어 “과자의 공포’라는 소재명은 그대로 유지

할 것”이라며 “제과업계에서 300억 원 가량의 손배소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지만 국민 건강과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널리스트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PD는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해성이 없는 천연 첨가물을 사용해 안전한 과자를 만드는 업체들도 있다”며 “2편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과업계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소명에서 ‘방송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제과업계 “중금속 아니라 미네랄 성분…언론사 상대로는 최대 규모 손배소 계획”

2탄 방송 결정이 알려지자 제과업계는 ‘폭풍 전야’에 대비하고 있다. 크라운 해태 롯데 오리온 등 국내 대형 제과사 4곳은 언론사 상대로는 최대 규모인 300억 원 대의 손배소를 예고했다.

크라온제과의 한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의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결과에 상관없이 손배소를 추진한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 손배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적 60분’ 팀의 터무니없는 실험결과로 방송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추적60분’ 팀이 지적한 특정 중금속은 소비자들도 잘 알고 있는 미네랄 성분”이라며 “쌀 같은 유기물에도 이 성분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 ‘추적60분’ 팀이 문제 삼은 중금속이 포함된 과자를 3군데의 연구소에 보내 함량 검사를 했다”며 “그 결과 ‘추적60분’ 팀 자체 실험을 통해 보내온 함량의 10분의 1밖에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과업계 측은 연구소 3곳 실험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지만 ‘추적60분’ 팀은 한 연구소 실험 결과만을 제시했다”며 “이런 제과업계 실험 결과도 ‘추적60분’ 팀은 기업 측이 제시한 결과라는 이유로 믿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손배소에 동참한 제과업계 측은 “각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월 15% 가량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이는 매월 30~40억 가량의 매출액 손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자의 공포’ 추가 보도로 인한 매출액 손실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2006년 4월 18일

## 주병진 손배소 패소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 씨가 지난해 11월 국가와 문제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13일 주 씨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제기예 앞서 성추문 사건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공에 이익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씨는 2000년 서울 한남동 모 호텔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7)씨를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공소 기간에 따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향신문 2006년 4월 14일

## MBC 최문순·엄기영 씨, 월간조선 상대 소송

문화방송과 문화방송 최문순 대표, 엄기영 이사는 15일 월간조선과 이 잡지사 우모 기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 총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월간조선은 2005년 10월호에 우 기자가 작성한 ‘최문순 MBC 6개월의 난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초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확인 불가능한 전언에 의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문화방송 사장 선출 과정이 청와대 등 권력층과 그에 부합하는 노조 등에 의해 음모적으로 진행됐고, 최 대표가 현 권력층과 특정 세력의 배후를 업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사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이어 “피고들은 이 기사에서 엄 이사가 사장이 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층에 공을 들였으나 친노 성향의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사장 출마를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내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2006년 2월 15일

## 조선일보, ‘제이유 보도’ 시사저널에 명예훼손 손배소 ‘이코노미 플러스’ 발행은 계속하기로

제이유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관·언 로비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언론사와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사회사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비판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시사저널 의혹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내겠다고 9일 밝혔다.

시사저널은 지난 8일 발매된 864호 <언론은 ‘돌’ 던질 자격 없다?> 기사에서 “우리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단계 판매 시장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며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일보생활미디어가 2004년 11월부터 제이유로부터 매월 2억 원을 받고 제작해 온 경제 월간지 ‘이코노미 플러스’의 사례를 들었다.

시사저널은 제이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간 직전에 조선일보 최고위 인사가 시내 한 호텔에서 주수도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안다. 그 다음부터 이코노미 플러스 발행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됐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 계열사인 월간조선이 “최근 제이유네트워킹을 해부하는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사화하지 않았다”며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면이 있어서 기사를 내보내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조선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생활미디어 이창의 대표는 “이코노미 플러스를 제작해주고 돈을 받은 것은 조선일보생활미디어의 외주 사업일 뿐인데, 시사저널이 범 조선일보로 확대해 마치 이런 관계 때문에 비판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동아가 보도하기 훨씬 전인 지난 4월 본지에 제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당시 만났다는 조선일보사 최고위 인사는 본사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며 “조선일보사와 생활미디어, 월간조선 등 3사가 10일 시사저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 이운삼 편집장은 “조선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아니어서 일단 내용이 도착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월간조선이 제이유그룹에 대한 해부 기사를 준비했다가 기사화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미디어는 제이유그룹이 지난 4일 이코노미 플러스에 대해 폐간신청하자 같은 이름으로 등록 신청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잡지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창의 대표는 “제이유 쪽에서 발행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등록 신청을 했다”며 “정기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폐간할 이유가 없고, 제호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6년 05월 10일

## “조선일보 만평이 명예훼손” 노 대통령, 정정보도 청구 소(訴)

신문 만평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지난해 8월 8일 기자간

담회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회견 중 테이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며 “다음 날 조선일보 만평 ‘거짓말 금세 들통’에서

는 내가 마치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2006년 2월 17일

## 대법원, 사상 첫 언론사 고발 인터넷 신문 ‘판사가 금품수수’ 보도… “사법부 명예훼손”

대법원은 20일 ‘법원 간부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수천 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폴리뉴스’ 운영자 김모 씨와 취재팀장 오모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언론사를 수사기관에 고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공보관실 실무자 이름으로 낸 고발장에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신문에 게재해 법원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란

다”고 밝혔다.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JU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 로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 지방법원 A판사가 1,000만 원 받는 등 판사 세 명이 거액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었다.

법률신문 2006년 4월 24일

## 포털, ‘오보’는 가깝고 ‘정정보도’는 멀다?

이달 초 한 포털 사이트에 “강금실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열우당이 나라 망치고 있는데 찍으면 서울이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글이 올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털 쪽에 즉각 삭제 요청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박정희가 군사 독재를 하면서 정치·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반역사성을 보였는데, 그 딸인 박근혜도 그렇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 역시 선관위의 요구로 삭제됐다.

포털에 정당이나 정치인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이처럼 삭제된다. 그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차례 계속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국회에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고쳐 ‘인터넷을 통한 보도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사이트도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 때도 포털은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포털은 언론일까?

아직까지는 ‘언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정답이다. 지난 2004년 한 통신사는 ‘영화배우 전지현이 소속 기획

사 사장과 결혼한다’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포털들은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받아 사이트에 올렸다. 이 기사는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삼시간에 퍼졌지만 결국 오보로 밝혀졌다. 전 씨는 이 통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 씨는 포털 쪽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없었다. 신문법은 포털을 인터넷 신문에서 제외시켰고,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신문법에서 차용하고 있다. 때문에 포털 뉴스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한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1차 뉴스를 전달 받은 뒤 편집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뉴스를 가치에 따라 배열·분류하는 편집 역시 언론의 중요한 기능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따져보더라도 포털은 언론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용 엔에이치엔(NHN) 미디어서비스유닛장은 “언론사가 언론

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게재 등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오보라 하더라도 포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많은 이들이 포털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규율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언론중재법의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언론사에서 문제가 있는 기사가 중재 신청 등을 통해 정정되더라도, 기사를 제공받은 포털에 대해서는 강제로 기사를 정정하도록 할 수 없어 허위 기사가 돌아다닐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삼승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법적인 장치도 마련해야겠지만, 포털들도 자체적으로 눈에 잘 띄는 공간에 정정보도 코너를 마련하는 등 오보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6년 4월 13일